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2021. 12.



## 제1장 개발계획의 내용

### 1.1 계획의 개요

- 계획 명 :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서패동 432번지 일원
- 면적 : 449,380㎡
- 기간 : 2021 ~ 2024년
- 사업자 : 파주메디컬클러스터(주)
- 승인 기관 : 경기도 파주시
- 총 사업비 : 약 6,520억원 (도시개발)
- 주요 사업내용
  - 종합의료시설 : 아주대병원(500병상 규모)
  - 혁신의료단지 : 혁신의료연구센터(국립암센터), 제약업체 연구소, 바이오벤처 연구소
  - 바이오융복합단지
  - 공동주택, 상업시설,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
- 사업시행구도 : PMC 주도의 도시개발사업(SPC) 및 복합개발사업(PFV) 병행 시행
- 계획의 목적



[그림 1 - 1] 계획의 주요 목적

- 계획의 기대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의료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파주시민의 삶의 질 수준 제고
  - 파주형 메디컬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파주시의 신성장동력 확보 및 자족기능 제고에 기여



[그림 1 - 2] 계획지구 위치도

## 1.2 계획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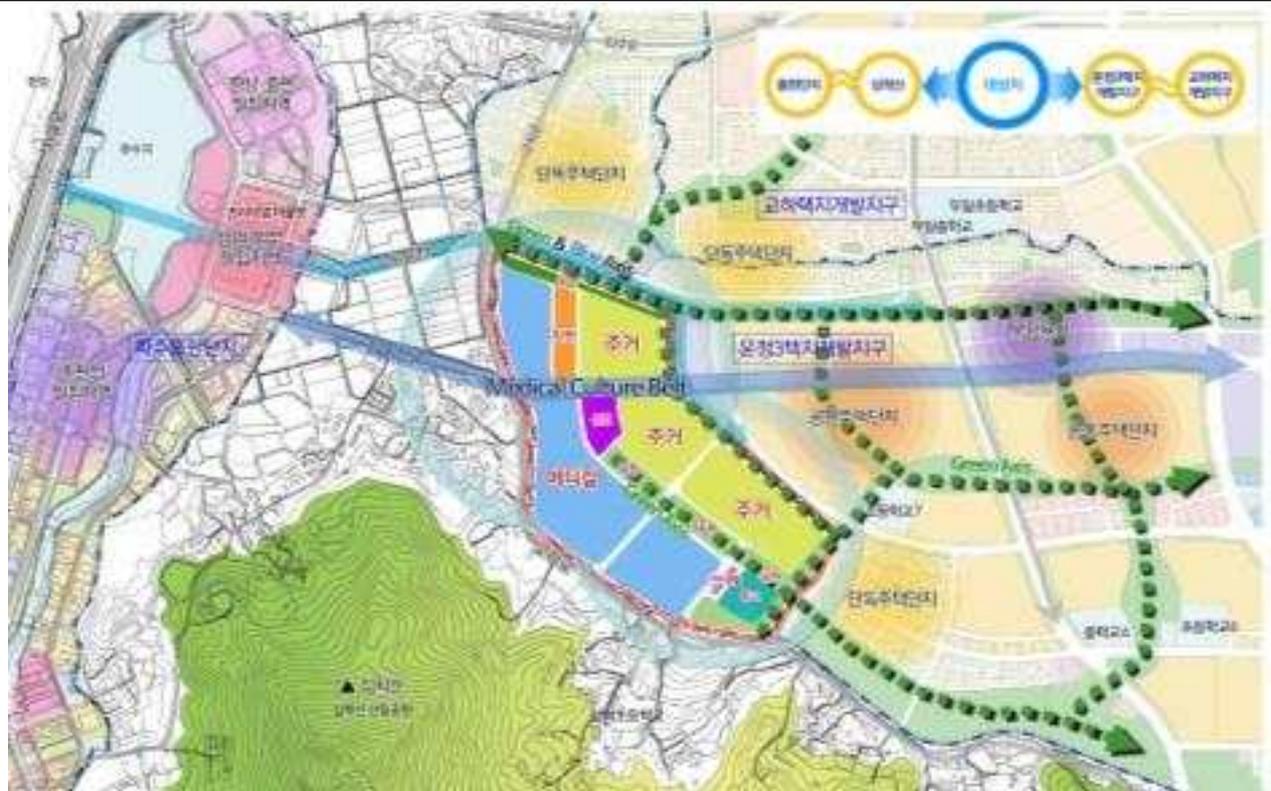
### 가. 계획의 기본방향

#### (1) 기본방향

- 과주출판단지, 세븐페스타 등 계획지구 서측의 문화·산업·상업시설과 연계가 용이한 지역에 “메디컬 클러스터”를 배치하여 과주시의 새로운 “Medical+Culture Belt” 조성 (과주출판단지 ~ 계획지구 ~ 운정3택지개발지구)
- 메디컬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각종 지원기능이 연계되도록 배치
- 계획지구 서측 심학산으로부터 이어지는 녹지축을 동측의 방골천과 북측의 문발천으로 연결하여 Green & Blue Axis 조성

#### (2) 기본구상

- 메디컬 클러스터 : 과주출판단지와의 연계를 감안하여 서측으로 배치 (종합의료시설 + 바이오융복합 단지)
- 주거(공동주택) : 운정3택지개발지구의 토지이용과 용도를 감안하여 동측으로 배치
- 준주거/상업 : 메디컬 클러스터와 공동주택간의 완충, 주민·이용객·종사자를 위한 생활서비스지원 및 연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 및 남측에 배치
- 공원·녹지 : Green & Blue Axis의 주요 결절부에 공원을 배치하여 쾌적한 환경조성 유도
- 학교 : 기존 심학초등학교와 주변 신설초교의 학구를 고려하여 대상지 남측에 배치



[그림 1 - 3] 과주메디컬클러스터 개발구상

(3) 도입기능

가) 메디컬클러스터

1) 종합병원

- 아주대학병원 유치를 통한 과주 메디컬 클러스터의 핵심 시설로 활용
- 부족한 병원기능 확충으로 과주시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 혁신의료연구단지 내 국립암센터 및 암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연구 활동 지원 추진

2) 혁신의료연구단지

- 암관련 세계최고 수준의 기초연구역량과 임상연구역량을 보유한 국립연구기관인 국립암센터 유치
- 국립암센터를 기반으로 암연구소, 부속병원, 국가암관리 사업본부, 국제 암대학원 대학교 등 다양한 암관련 시설의 도입 유도
- 다양한 의료관련 입주기업 유치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의료 바이오R&D센터 조성

3) 바이오 융복합단지

- 종합병원, 혁신의료연구단지와 연계하고,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업무, 각종 연구시설 등 다양한 시설의 복합화 된 서비스 제공

나) 지원시설

1) 상업시설

- 메디컬 클러스터 종사자 및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기능을 담당하는 상업 및 편의시설 공간 조성

다) 배후주거시설

1) 공동주택

- 한강 ~ 과주출판단지 ~ 롯데아울렛/세븐페스타 ~ 의료시설/산업 ~ 과주운정 중심상업지역을 잇는 과주시의 새로운 발전축 구성에 따라 중심기능을 지원하는 배후 공동주택 단지 조성
- 메디컬 클러스터 뿐만 아니라 발전축에 입지하는 새로운 중심기능에 종사하는 종사자를 위한 주거 단지 조성

2) 준주거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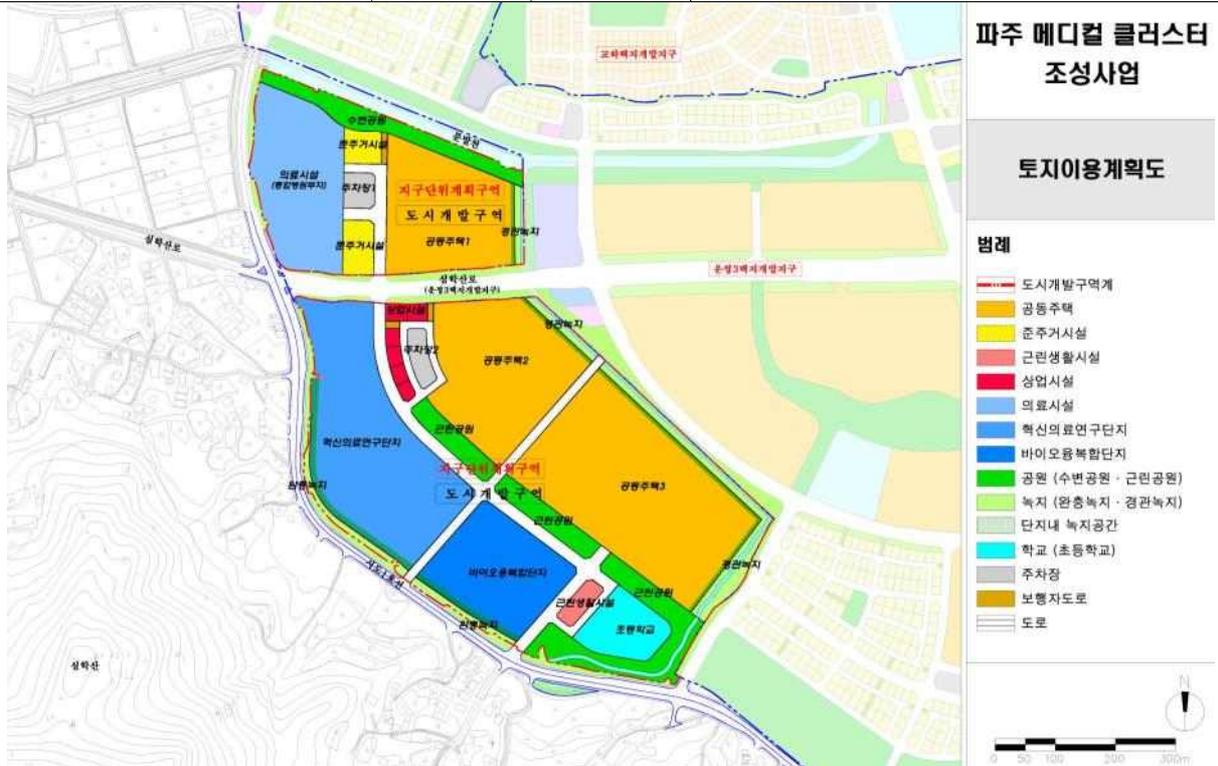
- 메디컬 클러스터와 주거기능간의 완충기능과 생활서비스 기능을 담당하는 준주거시설 및 근린생활 시설 계획
- 준주거 시설은 상업시설 및 주차장과 인접한 지역, 근린생활시설은 바이오융복합단지 인근에 조성하여 주민,이용객 및 업무 종사자를 위한 효율적인 기능발휘 유도

나. 계획의 내용

(1) 토지이용계획

<표 1 - 1> 토지이용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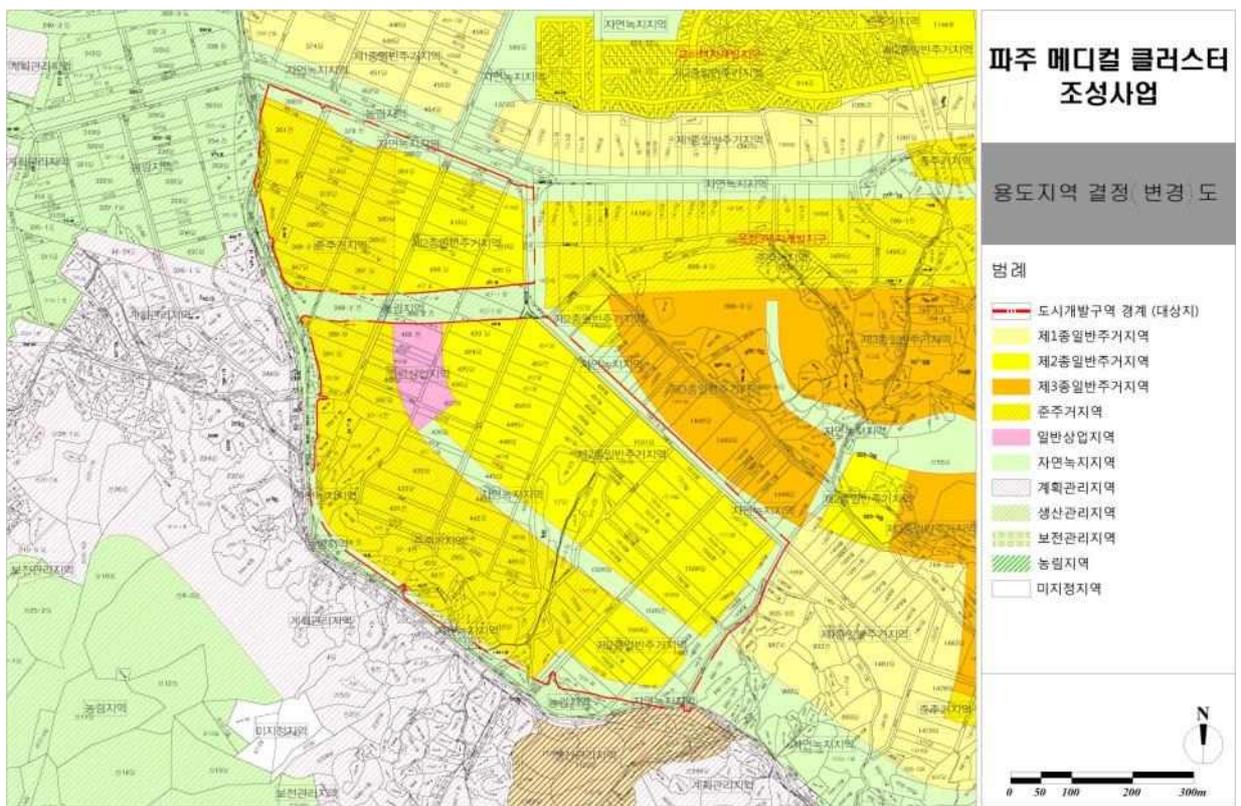
구 분		면적(m <sup>2</sup> )	구성비(%)	비 고	
자족용지	혁신의료연구단지	68,176	15.2	메디컬클러스터 141,828m <sup>2</sup> (31.6%)	
	바이오융복합단지	33,647	7.5		
	계	101,823	22.7		
도시기반 시설용지	의료시설	40,005	8.9	초등학교	
	공 원	수변공원	12,781		2.9
		근린공원	31,534		7.0
	녹 지	완충녹지	5,008		1.1
		경관녹지	15,881		3.5
	주차장	주차장1	3,057		0.7
		주차장2	3,124		0.7
	보행자도로	1,121	0.2		
	도로	35,489	7.9		
	학교	12,500	2.8		
	계	160,500	35.7		
주거용지	공동주택	171,012	38.1		
	준주거시설	8,236	1.8		
	근린생활시설	2,794	0.6		
	계	182,042	40.5		
상업용지	상업시설	5,015	1.1		
합 계		449,380	100.0		



(2) 용도지역 변경계획

<표 1 - 2> 용도지역 변경계획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	비 고
		기정 (현재)	증 감	변 경		
총 계		449,380	-	449,380	100.0	
주거지역	소계	-	▲ 369,860	369,860	82.3	
	제2종일반주거지역	-	▲ 192,386	192,386	42.8	
	준주거지역	-	▲ 177,474	177,474	39.5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	▲ 12,792	12,792	2.8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 66,728	66,728	14.9	
관리지역	소계	19,810	▽ 19,810	-	-	
	계획관리지역	1,533	▽ 1,533	-	-	
	생산관리지역	18,277	▽ 18,277	-	-	
농림지역		429,570	▽ 429,570	-	-	



[그림 1 - 4]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제2장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 2.1 주민 의견수렴 개요

- 본 계획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제16조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관계 행정기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음

####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공고

##### (1) 공람공고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요약문, 공고문 등은 파주시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https://www.eiass.go.kr>)에 게시하였음
- 신문공고 : 2021년 3월 11일(국민일보, 인천일보)

##### (2) 공람장소

- 파주시청 통일기반조성과
- 파주시 교하출장민원실

##### (3) 공람기간

- 2021년 3월 15일 ~ 2021년 4월 9일 (20일간,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4) 의견제출기간

- 2021년 3월 15일 ~ 2021년 4월 16일

파주시 공고 제2021 - 536호

##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동시에 개최합니다.

2021. 3. 11.

파 주 시 장

### 1. 개발계획 개요

- 사업 명 :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서폐동 432번지 일원
- 면 적 : 449,380㎡
- 개발계획(안) : 종합의료시설, 혁신의료연구단지, 의료바이오 R&D센터 등

### 2. 공람 기간 및 장소

- 기간 : 2021. 3. 15. ~ 2021. 4. 9. (20일 간,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장소 : 파주시청 통일기반조성과 (파주시 시청로 47, 3층 / 031-940-5362)  
교하출장민원실 (파주시 돌단풍길 34 / 031-820-7631)
- 관계도서 : 게재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 3. 주민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2021. 3. 24.(수) 14:00 / 운정행정복지센터 다목적홀(와석순환로 415)  
\*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발열(37.5℃ 이상), 호흡기 증상자(기침·인후통 등) 및 마스크 미착용 시 참석 불가하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참석인원(100인 미만) 초과 시 참석이 제한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의견 제출시기 및 방법

- 제출기간 : 공람시작일로부터 공람종료일 이후 7일 이내 (2021. 4. 16. 까지)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각 공람장소에 서면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주민의견 등록

### 5. 기타사항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요약서는 파주시청 홈페이지(www.paju.go.kr)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시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통일기반조성과(031-940-5362)로 문의 바랍니다. 끝.

파주시 공고 제2021 - 536호

##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동시에 개최합니다.

2021년 3월 11일  
**파주시장**

### 1. 개발계획 개요

- 사업명 :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서패동 432번지 일원
- 면 적 : 449,380㎡
- 개발계획(안) : 종합의료시설, 혁신의료연구단지, 의료바이오 R&D센터 등

### 2. 공람 기간 및 장소

- 기간 : 2021. 3. 15. ~ 2021. 4. 9. (20일 간,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장소 : 파주시청 통일기반조성과 (파주시 시청로 47, 3층 / 031-940-5362)  
교하출장민원실 (파주시 들단풍길 34 / 031-820-7631)
- 관계도서 : 게재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 3. 주민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2021. 3. 24.(수) 14:00 / 운정행정복지센터 다목적홀(와석순환로 415)  
\*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발열(37.5°C이상), 호흡기 증상자(기침·인후통 등) 및 마스크 미착용 시 참석 불가하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참석인원(100인 미만) 초과 시 참석이 제한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의견 제출시기 및 방법

- 제출기간 : 공람시작일로부터 공람종료일 이후 7일 이내 (2021. 4. 16. 까지)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각 공람장소에 서면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주민의견 등록

### 5. 기타사항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요약서는 파주시청 홈페이지(www.paju.go.kr)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시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통일기반조성과(031-940-5362)로 문의 바랍니다.

[그림 2 - 2] 초안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신문광고 (국민일보)

**파주시 공고 제2021 - 536호**

##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동시에 개최합니다.

2021년 3월 11일  
**파 주 시 장**

- 1. 개발계획 개요**
  - 사업명 :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서패동 432번지 일원
  - 면적 : 449,380㎡
  - 개발계획(안) : 종합의료시설, 혁신의료연구단지, 의료바이오 R&D센터 등
- 2. 공람 기간 및 장소**
  - 기간 : 2021. 3. 15. ~ 2021. 4. 9. (20일 간,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장소 : 파주시청 통일기반조성과(파주시 시청로 47, 3층 / 031-940-5362)  
교하출장민원실(파주시 돌단풍길 34 / 031-820-7631)
  - 관계도서 : 게재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 3. 주민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2021. 3. 24.(수) 14:00 / 운정행정복지센터 다목적홀(와석순환로 415)
  - \*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발열(37.5℃이상), 호흡기 증상자(기침·인후통 등) 및 마스크 미착용 시 참석 불가하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참석인원(100인 미만) 초과 시 참석이 제한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의견 제출시기 및 방법**
  - 제출기간 : 공람시작일로부터 공람종료일 이후 7일 이내 (2021. 4. 16. 까지)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각 공람장소에 서면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주민의견 등록
- 5. 기타사항**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요약서는 파주시청 홈페이지(www.paju.go.kr)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시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통일기반조성과(031-940-5362)로 문의 바랍니다. 끝.

[그림 2 - 3] 초안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신문공고 (인천일보)



[그림 2 - 4] 정보통신망 게시

나. 주민설명회 개최

- 참석인원 : 42명 (참석자 명부 작성 기준)

<표 2 - 3> 주민설명회 개최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파주시	2021.03.24 (수) 14:00	운정행정복지센터 다목적홀	-

<표 2 - 4> 주민설명회 질의/응답 주요내용

구 분	주요 질의(요청) 내용	주요 답변 내용 (현장)	비 고
시민1	•의료센터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관련된 조사내용 제시 바람	•의료폐기물에 관련된 사항은 현재 사업지구 내 구체적 설계가 진행되지 않아 정량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는 환경영향평가에서 각종 폐기물 발생 원단위를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임	
	•의료시설 부지로는 35%밖에 차지하지 않는 이유	•공공주택용 토지분양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의료센터 등의 건립을 위한 지원의 형태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임	
	•금개구리, 맹꽁이 등 동물상 조사를 철저히 진행해주시기 바람	•금개구리, 맹꽁이같은 경우는 문헌조사를 통해 서식지에 관한 사항을 인지한 상태이며, 북측 운정3지구에 대체서식지가 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됨. 본 사업 현장조사시 계절적 요인에 따라 발견되지 않았으나, 추후 발견될 경우 대체서식지를 조성 및 기타 저감방안 등을 수립할 계획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게 되면 각 종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기에 맞춰서 조사를 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분기별 계절별로 조사를 진행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음	
	•폐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내부에 처리할 계획은 없나요?	•발생하는 폐수는 최소화 할 것이며,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방류될 위험은 없음	

<표 2 - 4> 계 속

구 분	주요 질의(요청) 내용	주요 답변 내용 (현장)	비 고
시민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창출 및 기업유치 관련 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계별로 나눠서 신약이나 바이오 관련 기업을 유치할 계획에 있으며, 기업들이 단지내에 연구 활동을 할수있게끔 지원활동을 할 예정에 있음 또한, 이를 위해 펀드를 조성할 계획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펀드조성의 의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적으로 외부에 투자를 받아서 신약개발이나 의약품 개발을 하게되는데, 기업유치를 위해 펀드를 조성해서 입주기업을 지원할 계획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한미군 공여구역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SPC 또는 민간기업의 개발주체 가능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PC는 파주도시관광공사가 참여출자를 완료하였고, 민간협동으로 파주시에서 원하고 있는 종합병원, 일자리 안정, 기업유치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됨 또한, 주한 미군 관련 법은 공공만 시행해야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파주시의 정책 의지와 절차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파주도시관리공사가 참여하였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료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65% 부지에 대해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가 이익을 내고 그 이익을 가지고 아주대병원에 지원을 하는 것인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합의료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비용에 대한 이유만 있다고 볼 수 없고 입지와 병원 주변환경이 상당히 중요하고 까다로움 중사자들이 주변에 거주하면서 누리는 편의시설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아주대병원 등 메디컬클러스터에 근무할 인원을 약 1만여명 예상하고 있고 직장 근처에 거주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편리하도록 한 토지이용계획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주대병원 지원 규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주대학교 병원 건립할때 소요되는 비용을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사업주체가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구체적인 지원방식은 협의중임. 구체적인 지원 규모 및 방안은 추후 수립할 계획임</li> </ul>	

<표 2 - 4> 계 속

구 분	주요 질의(요청) 내용	주요 답변 내용 (현장)	비 고
시민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파주시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시 독자적으로 시행하기는 곤란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영향평가 종료시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년(2022년)도 중반기나 하반기쯤 예상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상협의 시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단계 개발계획 승인이 되고나면 보상협의를 할 수가 있으며, 협의보상과 환경영향평가는 별도로 진행할 계획임</li> </ul>	
시민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상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허가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 내년 후반기에 토지주가 참여한 보상협의위원회를 구성해 감정평가를 진행하려고함. 2022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자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향후 설명회 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임</li> </ul>	
시민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변 심학산을 고려한 층 수 계획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의 층 수 계획은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진행시 각 기관들의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임</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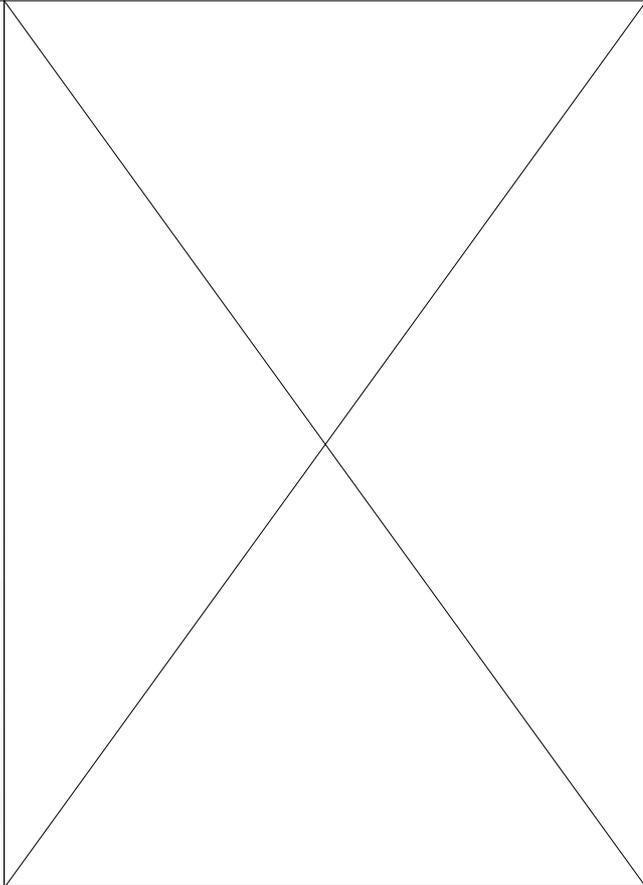
[그림 2 - 5] 주민설명회 현장사진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사업명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사업위치	경기도 파주시 서패동 432번지 일원		
사업시행자	파주메디컬클러스터(주)		
개최장소	문경동행경북지센터	일시	2021.03.24(수) 14:00
연번	성명	주소	서명
1	[redacted]	[redacted]	[redacted]
2	[redacted]	[redacted]	[redacted]
3	[redacted]	[redacted]	[redacted]
4	[redacted]	[redacted]	[redacted]
5	[redacted]	[redacted]	[redacted]
6	[redacted]	[redacted]	[redacted]
7	[redacted]	[redacted]	[redacted]
8	[redacted]	[redacted]	[redacted]
9	[redacted]	[redacted]	[redacted]
10	[redacted]	[redacted]	[redacted]
11	[redacted]	[redacted]	[redacted]
12	[redacted]	[redacted]	[redacted]
13	[redacted]	[redacted]	[redacted]
14	[redacted]	[redacted]	[redacted]
15	[redacted]	[redacted]	[redacted]
16	[redacted]	[redacted]	[redacted]
17	[redacted]	[redacted]	[redacted]
18	[redacted]	[redacted]	[redacted]
19	[redacted]	[redacted]	[redacted]
20	[redacted]	[redacted]	[redacted]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사업명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사업위치	경기도 파주시 서패동 432번지 일원		
사업시행자	파주메디컬클러스터(주)		
개최장소	문경동행경북지센터	일시	2021.03.24(수) 14:00
연번	성명	주소	서명
1	[redacted]	[redacted]	[redacted]
2	[redacted]	[redacted]	[redacted]
3	[redacted]	[redacted]	[redacted]
4	[redacted]	[redacted]	[redacted]
5	[redacted]	[redacted]	[redacted]
6	[redacted]	[redacted]	[redacted]
7	[redacted]	[redacted]	[redacted]
8	[redacted]	[redacted]	[redacted]
9	[redacted]	[redacted]	[redacted]
10	[redacted]	[redacted]	[redacted]
11	[redacted]	[redacted]	[redacted]
12	[redacted]	[redacted]	[redacted]
13	[redacted]	[redacted]	[redacted]
14	[redacted]	[redacted]	[redacted]
15	[redacted]	[redacted]	[redacted]
16	[redacted]	[redacted]	[redacted]
17	[redacted]	[redacted]	[redacted]
18	[redacted]	[redacted]	[redacted]
19	[redacted]	[redacted]	[redacted]
20	[redacted]	[redacted]	[redacted]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사업명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사업위치	경기도 파주시 서패동 432번지 일원		
사업시행자	파주메디컬클러스터(주)		
개최장소	문경동행경북지센터	일시	2021.03.24(수) 14:00
연번	성명	주소	서명
1	[redacted]	[redacted]	[redacted]
2	[redacted]	[redacted]	[redacted]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그림 2 - 6] 주민설명회 참석자명부

## 9.2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내용

### 가.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 검토의견

-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함  
 - 승인기관(파주시) 및 협의기관(한강유역환경청), 기타 관계기관(경기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주민 의견의 경우 온라인(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1건의 의견이 제출됨 (※서면제출 건 없음)

공정한 사회! 따뜻한 경제! 도약하는 파주!



## 파 주 시

수신 파주메디컬클러스터(주) 귀하  
(경유)

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제출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1. 파주메디컬클러스터(주) PMCP-21-0308-02(2021.03.08.)호와 관련
2.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에 따라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협의 기관 및 주민 의견을 불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속히 본안을 작성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협의의견 1부. 끝.

파 주 시



주무관	김형욱	신성장사업 TF팀장	이영훈	동일기반조성 전결 2021. 4. 28. 과장	나호준
-----	-----	---------------	-----	------------------------------	-----

협조자

시행 동일기반조성과-3953 (2021. 4. 28.) 접수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5362 팩스번호 031-940-5509 / smile7962@korea.kr / 비공개(5)

[그림 2 - 7]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 검토의견 회신공문

■ 협의기관 의견

○ 한강유역환경청

I. 사업개요

- 사업명 :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서패동 432번지 일원
- 계획내용 : 도시개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구분	명칭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파주메디컬클러스터	경기도 파주시 서패동 432번지 일원	-	증) 449,380	449,38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분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지역	합계	449,830	-	449,380	100.0
	소계		증) 373,533	373,533	83.1
	제3종일반주거지역		증) 170,888	170,888	38.0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증) 202,645	202,645	45.1
	일반상업지역		증) 27,426	27,426	6.1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증) 48,421	48,421	10.8
	소계	19,810	감) 19,810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533	감) 1,533		
	생산관리지역	18,277	감) 18,277		
	농림지역	429,570	감) 429,570		

- 토지이용계획 수립

구분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자족용지	혁신의료연구단지	65,772	14.6	메디컬클러스터 156,640㎡ (34.8%)	
	바이오융복합단지	49,521	11.0		
	계	115,293	25.6		

- 1 -

구분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도시기반시설용지	의료시설	41,347	9.2	3개소		
	공원	수변공원	9,037		2.0	
		근린공원	17,690		3.9	
		소공원	3,000		0.7	
		소계	29,727		6.6	
	녹지	원충녹지	16,503		3.7	
		경관녹지	4,422		1.0	
		소계	20,925		4.7	
	주차장	주차장1	3,065		0.7	2개소
		주차장2	3,076		0.7	
소계		6,141	1.4			
소계		3,020	0.7			
주거용지	보행자도로	41,937	9.3	31.9		
	도로	143,097	31.9			
	계	167,890	37.4			
상업용지	공동주택	7,634	1.7	39.1		
	준주거시설	175,524	39.1			
	계	4,994	1.1			
상업용지	상업시설	10,472	2.3	3.4		
	주상복합	15,466	3.4			
	계	449,380	100.0			

- 협의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2
- 사업시행자/승인기관 : 파주메디컬클러스터(주)/파주시
-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

II. 초안의견

1. 총괄

- 본 계획은 경기도 파주시 서패동 432번지 일원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면적: 449,380㎡)을 위한 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 시 환경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본 초안의견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함

- 2 -

- 급회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개발 중인 파주운정3단지개발지구를 포함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동 계획지구의 누적적 생태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선정·비교하고 방갈출 수계 보호, 블루그린 네트워크 계획 등 생태친화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소하천(방갈출)을 폐지하고 기존 유로를 복개할 경우 하류 하천의 유량 감소(건천화), 수질 악화, 지하수 충전 기능 저하 및 생물서식지 기능 훼손 등의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존 수계를 최대한 유지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친수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수질, 대기(악취, 건강영향평가 항목 포함), 토양, 소음·진동 등의 환경현황 조사 시 조사방법(리질 선정, 예측 조건, 예측 시 사용된 수치 등)에 대한 산정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시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에 따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함
- 모든 조사는 항목별 특성과 계절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조사자의 인적사항 및 근거자료 등을 반드시 수록·제시
- 주변에 계획·추진중인 개발계획을 조사하고 누적하여 영향 예측
-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환경보전목표를 설정·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선행 추진경위와 추진과정에서의 관계행정기관의 협의내용이 있을 경우, 그 협의내용 및 반영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2. 세부 의견

가. 계획의 적절성

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 및 관련 계획·정책과의 연계성과 부합 여부 등을 면밀히

- 3 -

검토하여 계획의 적정성을 제시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등의 환경적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방안을 강구·제시하여야 함

- 파주시 환경보전계획 및 환경기준 등과의 연관성,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의 적정 반영여부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제시
- 사업지구 인근으로 추진중인 다수의 택지개발사업 현황을 고려할 때 시가지의 무분별한 확장이 우려되므로 아래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주택 수요·공급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고 계획 규모를 결정하여야 함
- 사업지구 주변으로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주택단지, 산업단지, 교육시설 등 인구유발사업의 조성 현황과 이를 통해 유입이 예상되는 인원을 조사·제시
- 사업지구가 포함된 생활권의 계획인구와 현재인구 비교, 추진·계획중인 택지개발사업 간의 규모 비교, 최근에 조성된 주거단지의 초기분양률 조사·제시
- 사업지구는 북측으로 문발천과 연결하고 범정부호층 큰기러기가 서식·도래하는 농경지로 이루어진 입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 급회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밀도 증가와 이로 인한 누적적 생태환경영향이 예상되는데 입지 및 수단·방법 대안은 동일한 입지를 대상으로 경제부 일부만을 9,300㎡ 변경하는 대안으로 형식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실효적인 대안 비교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파주시와 인접한 운정·교하택지개발지구 개발 현황과 급회 계획대상지 입지 특성을 토대로 공동주택 조성 중심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필요성 및 규모 적절성을 비교하여 실효적이고 차별성 있는 다수의 복합대안을 선정·비교하되, 복합대안 선정·비교 시에는 수변공원 규모 확대 등 사업시행에 따라 증가하는 환경부하를 최대한 저감할 수 있는 대안을 선정·비교 제시

- 4 -

[그림 2 - 8] 관계기관 검토의견

<p>나. 입지의 타당성</p> <p>1) 자연환경의 보전</p> <p>가) 생물다양성·서식지의 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주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법정 보호종 맹꽂이가 조사되었으며, 해당 법정보호종 보전을 위하여 대체서식지가 급회 사업대상지 복측에 조성된 점을 고려할 때, 사업부지 내부에 맹꽂이를 포함한 법정보호종 양서류의 서식가능성이 높으나, 조사시기가 적절하지 않으므로 해당 법정보호종 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추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서식 현황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li> <li>- 서식이 확인될 경우, 사업부지 내 대체서식지 조성과 외부 기존 서식지로의 이주를 함께 계획하여야 함.</li> <li>○ 급회 평가서에 큰기러기, 재두루미 등 법정보호조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여 구체적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동 지역 철새의 비행고도 및 이동경로 등의 현황을 추가 조사하여 영향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li> </ul> <p>나)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형변화를 최소화하는 친환경적 부지조성 방안을 검토·제시하고, 사업시행 시 발생하는 절·성토 사면 발생구간에 대해서 사면안정분석 실시 후 절·성토 규모 축소 등 현장 여건에 맞는 사면안정대책을 수립하여야 함</li> <li>- 주변 지형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평면도 제시</li> <li>- 주요 절·성토 사면에 대해 중·횡단면도를 작성하고 절·성토 사면의 높이, 사면경사 등 표시</li> </ul>	<p>다)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의 경관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역경관의 특성을 포함한 현황경관 분석결과와 이를 토대로 주변 가시지역의 주요 조망점 선정, 최적(안)에 대한 경관영향 예측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영향 정도를 예측한 후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함</li> <li>- 계획으로 허용되는 용적율과 건폐율, 건축물 높이 등 3차원적 개발규모와 높이 등을 적용하여 조망점별 시뮬레이션 실시·영향 검토 후 저감방안 등 검토·제시</li> <li>- 바람길 및 통풍축 확보, 주변과 조화로운 인공경관 스카이라인 계획, 개발에 따른 주요 지점 및 경계부 도로부에서의 시각적 압도감 저감계획 등 검토·제시</li> <li>- 인공경관 노출 최소화를 위한 단지 내 건축물의 차등적 배치와 자연성 기반의 차폐 기능 강화방안 등 검토·제시</li> </ul> <p>라) 수환경의 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회 계획은 사업지구 내 존재하는 소하천(방골천)을 폐지하고 기존 유도를 복개할 계획이나, 수계가 복개될 경우 하류 하천의 유량 감소(건천화), 수질 악화, 지하수 충전 기능 저하 및 생물 서식지 기능 훼손 등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므로</li> <li>- 일부 구간 하천이설 및 부지경계 조정 등을 통해 기존의 수계를 최대한 유지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친수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li> <li>- 수변공간 완충지역 확보</li> <li>- 하천면적 및 유로변경이 있을 경우 소하천정비종합계획과의 부합 여부 검토</li> <li>○ 공사 및 운영시 토사유출, 오수 및 비점오염물질 등으로 인한</li> </ul>
<p>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침사지 용량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 가능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용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정</li> <li>○ 운영시 발생하는 오수(약 2,776.3m<sup>3</sup>/일)는 통일동산공공하수처리 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므로 파주시 하수도정비 계획을 확인하여 공급·처리시설의 대상구역, 공급·처리량, 여유용량, 구역 내 추가 개발계획 등을 조사하고, 사업완료 시기를 고려하여 시설용량의 적정성 분석·제시(관련기관 협의근거 제시)하여야 함</li> <li>○ 사업지구 운영시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사업지구가 속한 교하급수구역에서 상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상기 급수구역 내 용수수요량 증가로 2023년 완료되는 한강하류권 광역상수도 4차 사업을 통해 추가 확보되는 용수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공급할 계획이므로, 사업자는 평가서(본안)에 용수공급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관련기관 협의근거 제시)를 제시하여야 함.</li> <li>○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기법을 적용하여 비점 오염원 저감 및 물순환 개선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처리 효율이 높은 비점오염물질 처리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li> <li>○ 사업시행으로 인해 계획지구의 불투수면이 증가됨에 따라 우수 유출수의 최종 방류지점 홍수량 증가 등으로 침수 피해가 우려되므로 우수유출량 증가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li> <li>○ 수질오염총량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국립환경과학원, '19.3.)」에 따라 사업시행 전·후의 발생·배출 오염부하량 및 삭감부하량을 산정·제시</li> <li>- 지역개발부하량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li> </ul> </li> </ul>	<p>(환경부훈령 제1378호, 2020.12.28.) 제28조에 따라 관할지역 시행령 으로부터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받고, 같은 방침 제2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협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p> <p>2) 생활환경의 안정성</p> <p>가) 환경기준 부합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지구와 인접하여 다수의 정온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바, 공사 및 운영 시 대기질 영향(취기포화)을 예측하고 환경영향 및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li> <li>○ 계획지구 주변 도로(심학산로 등)와 정온시설의 거리가 인접하여 소음 영향이 예상되나 이에 대한 영향범위 예측이 누락되었으므로 소음 영향예측을 추가하고 소음 영향범위를 고려한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li> <li>-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 맞도록 사업시행 후 최대 소음도가 발생하는 시점에 대한 해당지구내(주거시설, 학교, 주상복합 중 주거 목적 시설 등)의 수평, 수직적인 공간적 소음 영향범위를 제시하고 (상세한 건축물 배치 등에 따른 각 등, 층별 소음도 예측이 아닌)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대안(토지이용계획 변경, 층수 제한, 상암시설 등의 전면배치 등)을 강구하여야 함</li> <li>○ 소음 민감계층이 상시 거주하여 높은 정온성이 요구되는 시설 (교육시설, 병원 등)에 대해서 「공사장 소음 피해구제」 확대를 위하여 기준을 '-5dB(A)'로 보정·적용*이 필요하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시 계획지구에 인접(234m 이격)한 심학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공사장 관리목표 기준을 '-5dB(A)'로 보정하여 평가하여야 함</li> <li>* 소음 민감계층, 공사장 소음 피해 구제 확대(환경부 보도자료, '18.12)</li> </ul> </li> <li>○ 운정3택지개발지구는 본 사업지구와 인접해있고, 2022년 8월에</li> </ul>

[그림 2 - 8] 계속

<p>완공될 예정으로 입주 후 본 지구의 공사기간과 중복되어 공사 소음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3대지개발지구에 건설예정인 인접 정온시설(주거 및 교육시설)에 대한 공사소음의 영향을 검토하여야 함.</li> </ul> <p>○ 사업지구 주변 소음영향권 내에 다수의 정온시설 및 학교가 위치하고 사업 시행 시 소음·진동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환경기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이 다수이므로 공사 진행에 따른 소음·진동 피해를 예측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저감효과 포함)을 수립·제시하여야 함</p> <p>※ 소음·진동 현황조사는 최신 소음·진동공정 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27호)에 준하여 측정·실시</p> <p>○ 사업지구 내 다수의 지장물이 있으므로 토양오염 유발 가능성이 높은 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토양오염 개연성을 확인하고, 실측조사를 통하여 향후 주거용지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 처리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p> <p>나)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p> <p>○ 사업시행 시 발생하는 폐기물(지장을 철거시 포함)에 대하여 폐기물 분류별 특성, 종류, 발생량을 파악하여 제시하고, 폐기물 분류별 처리 주기를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장기 적체에 의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 분류별 매립, 소각, 재활용 목표량(%)을 정량적으로 계획·반영하고, 소각 및 매립 폐기물 감량화 계획을 자체적으로 강구하여 폐기물 처리 부하 최소화</li> </ul> <p>※ 소각, 매립, 재활용(타입) 계획 시 파주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참고</p> <p>○ 사업지구 내의 의료시설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할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하여 사업지구 내 에너지 절약 건축물 설치계획, LED 조명기기 설치계획, 저탄소 신재생 에너지 사용계획, 에너지 사용 절감 및 효율 증대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제시하여야 함</li> </ul> <p>3)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p> <p>가) 환경친화적 토지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지구는 법정보호종 큰기러기가 서식·도래하는 농경지로 이루어졌으며 인접하여 운영·교하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어 누적적 환경영향을 완충·저감하기 위한 녹지공간 확보가 필요한 지역임.</li> <li>- 하지만, 급회 제시된 토지이용계획은 공원녹지 조성규모가 충분하지 않고 기존 수계를 복개하는 등 사업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누적적 환경영향을 실효적으로 완충·저감하기 위한 공원·녹지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li> <li>- 특히, 「개발구상」(33쪽)에 제시된 바와 같이 문발천·방골천으로 이어지는 블루-그린 네트워크(Blue-Green Axis) 조성은 매우 중요하나, 사업부지 내부 방골천을 복개·이설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음</li> <li>- 따라서, 아래 제시한 사항들을 토대로 급회 개발사업과 인접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누적적 환경영향을 최대한 완충·저감하기 위한 생태친화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li> <li>· 문발천 수변공원 조성 규모 확대 및 방골천 복개 지양</li> <li>· 사업부지 동측 경계부 방골천 수계는 보전하고 수변부로 충분한 규모의 완충녹지대 조성</li> <li>· 사업부지 내부 방골천 수계 보전이 어려울 경우, 남측 경관녹지대로 수로를 이설하고 경관녹지대 폭을 대폭 확대하여 사업</li> </ul>
<p>부지 내부 및 경계부 방골천 수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p> <p>· 「개발구상」(33쪽)에 제시한 바와 같이 사업부지 중앙부 녹지축(Green Axis) 확보를 위한 공원·녹지대 조성</p> <p>○ 사업지구 내 현재 생태면적률, 사업특성, 환경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시 불투수성 포장재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투수성 포장 및 조정공간을 늘리는 등 목표·계획생태면적률(「생태면적률 적용 지침」 2016년, 생태면적률 최소달성목표 구도심외개발사업 40%)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을 설정·제시하여야 함</p> <p>○ 구체적인 건축물 계획이 없어 일조장애 발생 여부 및 정도에 대한 검토가 어려우므로 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변 정온시설(주거지, 학교 등) 및 사업지구 내부의 시설물에 대한 일조장애 영향 여부를 검토하고 적정 저감대책을 마련·제시하여야 함.</p> <p>○ 사업지구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관련 경기도 조례·고시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이므로, 사업지구에 설치하는 인공조명(가로등 등)으로 인하여 주거지 및 자연환경 등에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빛공해 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함.</p> <p>3. 기 타</p> <p>○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반드시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함</p> <p>○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본 검토의견과 여타 관계행정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립 결과를 종합하여 그 내용 및 반영여부를 요약제시(각 기관 및 주민의견 수면 구분)하고, 반영된 의견은 해당항목에 작성·제시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의견보다 완화된 보전대책을 강구하거나 의견 간 상충 등의 사유로 반영되지 아니한 의견에 대하여는 미반영 사유와 함께 대안을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사상의 환경현황 조사내용, 환경영향 예측결과 및 저감대책 등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가능한 한 정량화하여야 함</li> <li>- 특히, 현황조사 및 조사결과는 조사자 인적사항 및 조사자 의견을 첨부 제시하고 장래 환경영향 예측(예측조건, 예측작용 방법, 예측 시 사용계획, 수치 등)은 그 적용 및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li> </ul> <p>○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대행에 따른 분례계약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원도급 및 하도급률 검토서 등을 부록에 제시하여야 함.</p>

○ 경기도 환경정책과

구분	검토 의견
경기도 환경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산정역율을 40.4%로 계획하였으나 해당 생태지역을 산정 시 방금전이 포함되었을 경우 하천 면적과 사업계획에 따라 추가 확보할 면적을 구분하여 제시하시기 바람</li> <li>- 사업부지 복식농 농림지역, 하천과 인접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녹지확보를 검토하고 건축물의 옥상녹화, 벽면녹화 등 다양한 공간유형을 적용하여 보다 친환경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시기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 PM-10, PM-2.5, NO<sub>x</sub> 유차위표준도 만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기기를 설치하고 가온초과 시 즉시 추가 저감대책을 수립운영하시기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조피해 예측 시 공칭3대지개발지구 등 현재 계획 중인 사업 준공 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li> <li>•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건축물을 배치할에도 일조피해가 지속해서 야기되고 있으므로 설계단계에서 건축물 배치 높이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선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사업 추진 시 인구 유입으로 인해 증가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처리-가능유량' 및 '할부 실적계획' 여부 등을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계획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설계에 반영하시기 바람</li> </ul>

○ 파주시 의견

구분	검토 의견
환경보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승인부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62조'항 규정에 따라 인허가를 한 날로부터 20일내 생태계 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경기도지사에게 사업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공사 중 멸종위기 야생생물 발견시 보호·채취, 이동(이식) 등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제시된 각 분야별 영향예측에 따른 저감방안 등을 준수하여 환경에 미치는</li> </ul>

환경보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li> <li>• 대기, 소음 및 악취 등으로 인한 주변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li> <li>• '주차장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100개 이상 설치 할 경우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93조(충전시설 설치대상)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충전시설의 종류, 수량 및 설치 지점 등)을 시설물 건축계획에 포함하여야 함</li> <li>• 설치 할 충전시설의 수의 20% 이상을 급속 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적인 사업(보안) 수질오염총량 협의결과 별도승부</li> <li>• 사업 진행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시(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비교란 제3호 가목 제외)와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제정, 변경형의 포함의 대상사업인 경우 부하량 협의를 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규모가 1,000m<sup>2</sup>이상으로 공사 시작 전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건설공사장 관리제도 포함)를 반드시 득해야 하며, 공사장 주변 거주자 등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한 사업장 경계부선 설치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 세운 시설 계획 등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미신고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 시행 시 공사장 내, 공사차량 진출입로 등 비산먼지로 인한 오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살수장치 및 공사장 출입구에 권압인젝션 분포 배치를 하여 비산먼지 오염원이 공사장 외부에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 시작 전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공사(가) 등 특정광역시행규칙 별표1을 5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공사 전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반드시 득해야 하며, 공사장 인근 주택 거주자 등의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음 휴일영역에 설치 및 저음을 장애 사용, 적정차 사용 장비 부착금지, 공사장 가우징, 일몰 배제 시 바닥 매트리스 사용 등 공사장 소음(배출) 방지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단, 부지영역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주택, 등주, 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은 제외함) ※ 미신고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li> <li>• 또한, 공사 진행 시 '소음진동관리법, 제'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인 주간 65db 이하, 야간 50db 이하, 야경, 저녁 60db이하를 준수하여 운영 하여야 함</li> </ul>

환경보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 중 안전역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으로 건축물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2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준수 의무 등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li> <li>•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동법 제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기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따르(시공)환경보건법에 제출하고, 일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함</li> <li>• '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6조 별표2 규정에 의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li> <li>• '환경보전법, 제23조제6항(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규정에 의하여 확인결과를 실시 하여야 함(문준관) ※ 경고사항 : 도심지역, 거주자 주택 인근 공사 시 공사장 출입구 외부 벽면에 표출을 소음 측정기 설치로 공사장 내 소음 규제기준 준수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고를 설치시 허가나 신고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함</li> <li>• '도시경관법(간편) 설치시 '목외관고도' 등의 관리와 목외관고도선' 적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조례, 고시 등에 따라 사전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설치하여 주시기 바람</li> <li>• '도시교통정체 촉진법'에 따른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교통수요 파악 및 교통혼잡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제출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농지포기합의를 득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인가 시 농지전용합의를 득하여야 함</li> <li>•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합의를 득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수상향량 2,781 m<sup>3</sup>/일, 외부유입량을 고려한 환수량 계산량 1,237 m<sup>3</sup>/일</li> <li>• 용인과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제, 상수도 사용계획 시 상수도 공급을 위한 분기경과 관경 확대, 가압설치 등 세부 계획은 상수도와의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모든 공사는 원인과 부담금으로 시행</li> </ul>

하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사업계획 수립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위치, 사업기간, 사업비 등)에 대하여 협의 하여야 하며, 입주시기는 통일유량 하수처리시설(중심) 준공 이후로 계획하여야함</li> <li>• 오수처리계획을 기존저질관로 연결하는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출판단지 종개량프랑 및 차갑-방류 관로 증설(또는 별도계획)되어야 하므로 세부규모 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부지 내 국공경유에 대하여 관리령에 유무상 구속 협의를 하여야 함</li> <li>•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저탄소 친환경 교통수단의 자전거 이용 시설 설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li> <li>• 환수량 산정 및 설계년도 적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도</li> <li>• 개발사업(신도시, 메디컬클러스터 등)으로 인한 불투수 면적이 증가함에도 CN2이 오히려 감소 되어 환수량의 변화가 미미한 것으로 제출한 바,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도</li> <li>• 환류강수량이 파주시 방재성능표 강수량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방재성능 목표 만족여부에 대한 추가검토 필요</li> <li>•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농경지-도시지역)을 감안, 대체시설 설계년도 변경을 검토 (50년 빈도 → 80년 빈도)하여 계획용수량, 대체수로 확보, 대체수로 복원 등 제시</li> </ul>
건설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개발에 따른 환수량의 변화가 본류하천(문월천)에 미치는 영향 검토</li> <li>• 방출된 유역제외 변경, 문월천 합류지점 변경, 토지이용계획 변화에 따른 환수량 변화 등 다양한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저수역 안정성 확보방안 제시</li> <li>• 대체시설(대체수로) 유자격의 주체 및 유자격이 범한 제시</li> <li>• 사업시행자는 소취원(방출관)을 폐지하고 대체수로 신설 계획인 바 하류부에 남는 기존 수로 존치여부 및 유자격의 주체, 대체시설(대체수로) 유자격의 주체 및 유자격범한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추진 전 소취원 폐지, 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li> </ul>

구분	주민 의견
주민 (미(○))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조치하여 주시길 바람
	• 파주메디컬클러스터는 의료, 바이오, 피복, 연구소 등이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특히 병원과 600개여 개 혁신의료 기업이 입주하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이 많을 것임
	• 초안 10.1.4항 수환경보전에 관련하여 초안에는 생활오수만 검토하였는데, 오수 조사 보다는 앞서 언급한 의료 관련 폐수와 병원이 입주하므로 이곳에서 발생하는 산업 폐수와 의료 폐수를 조사하여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대책이 필요 함. 외부 위탁 처리 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폐수 보관 방법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보관에 따른 부패와 병원 군 누출 등)
	• 현재 통일동산 공공폐수처리장은 산업 폐수 처리가 불가 할 것임
	• 10.2.2 환경기초시설의 적합성 관련 • 병원과 연구소에서 배출 되는 의료폐기물은 1)코크물류폐기물, 2)생리폐기물, 3)순상상장기물, 4)상용화학폐기물, 5)알콜폐기물 이 발생 할 것이고 이를 어떻게 처리 조치요. 기초자료 조사에는 생활 폐기물만 나열 됨 • 광부에서는 최근 코로나 19로 의료폐기물 처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있음. 가령 격리의료 폐기물은 당일 처리를 하게 함 • 무엇보다 수도관에는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이 부족하여 360km 떨어진 경산도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 됨 • 이런 것으로 해서 병원과 의료폐기물 발생업체는 적법한 처리에 소홀 할 수 있으니 초기 환경 평가 부터 어떻게 처리 할지를 평가사에 명문화 하여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임
	• 10.2.1.2 대기질(악취) 관련 : 임주 일대의 특성 상 악취 발생 가능성이 있으나 발생량이 무언인지 조사하고 이에 필요한 설비 도입을 검토하여 임주지역이 초기 부터 설치하게 영문화 할 것 • 또한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는지 건설 및 운영 단계에 주민 참여 patrol 계도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심학산 도시가 되어 할 것임
	• 10.2.3.3 친환경적 자원순환 관련 : 인근의 운영지역은 지역난방이 공급되고 있음. 이곳도 지역난방을 도입하여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노력이 필요 함
	• 상기 나열된 것들을 조사하여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입지가 적합한지 판단 할 수 있을 것이고, 추가하여 이런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확인하는 공영회 개최가 필요하다 생각함

[그림 2 - 8] 계 속

- 국민참여**  
Public participation
- 협의진행현황
- 평가항목 결정내용 공람
- 평가서 초안 공람**
- 행정처분현황
- 사용자지원

❖ 평가서 초안 공람 -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업명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사업위치	면형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서매동 (교하로 708) 432번지 일원	면적 449,380㎡
협의대상 (협의관련법령)	행정계획 [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사업구분	도시개발 / 도시개발구역	
사업개요	사업시행자: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주식회사 승인기관: 경기도 파주시 사업규모: 449,380㎡ 사업비: 6,520 억원	

초안공람 **주민의견수렴**

평가항목  의견제출자명

※검색결과: 1건

번호	평가항목	제목	의견제출자	첨부파일
1	산업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입주사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 조사 필요	이	

[그림 2 - 9] 주민의견 제출 확인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나.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결과

<표 2 - 5> 관계기관 검토의견 반영결과

구 분	검 토 의 견	반영내용 (미반영 사유)	비고
한강유역환경정	1) 총괄 • 본 계획은 경기도 파주시 서패동 432번지 일원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면적: 449,380㎡)을 위한 개발사업으로 사업 시행 시 환경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본 초안의견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함	• 초안검토의견을 반영하겠으며, 부득이한 경우 미반영 사유를 제시함	반영
	• 금회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개발 중인 파주온정3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동 계획지구의 누적적 생태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선정·비교하고 방골천 수계 보호, 블루그린 네트워크 계획 등 생태친화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소하천(방골천)을 폐지하고 기존 유로를 복개할 경우 하류 하천의 유량 감소(건천화), 수질 악화, 지하수 충전 기능 저하 및 생물서식지 기능 훼손 등의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존 수계를 최대한 유지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친수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계획지구 남측으로 방골천 대체수로를 마련하는 등 생태친화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	반영
	• 수질, 대기(악취, 건강영향평가 항목 포함), 토양, 소음·진동 등의 환경현황 조사 시 조사방법(지점 선정, 예측 조건, 예측 시 사용된 수치 등)에 대한 산정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시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에 따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함 - 모든 조사는 항목별 특성과 계절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조사자의 인적사항 및 근거자료 등을 반드시 수록·제시 - 주변에 계획·추진중인 개발계획을 조사하고 누적하여 영향 예측	• 환경현황 조사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에 따라 작성함	반영
	•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환경보전목표를 설정·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항목별 목표기준치 등 환경보전목표를 제시함	반영
	• 본 사업의 선행 추진경위와 추진과정에서의 관계행정기관의 협의내용이 있을 경우, 그 협의내용 및 반영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추진경위 및 추진과정에서의 주요 관계기관 의견 및 반영내용 등을 제시함	반영

<표 2 - 5> 계 속

구 분	검 토 의 건	반영내용 (미반영 사유)	비고
한강유역환경청	2. 세부의견		
	가. 계획의 적정성		
	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 및 관련 계획정책과의 연계성과 부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의 적정성을 제시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등의 환경적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방안을 강구제시하여야 함 - 파주시 환경보전계획 및 환경기준 등과의 연관성,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의 적정 반영여부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제시	• 파주시 환경보전종합계획을 포함한 상위계획을 검토하여 부합여부 등을 제시함	반영
	• 사업지구 인근으로 추진중인 다수의 택지개발사업 현황을 고려할 때 시가지의 무분별한 확장이 우려되므로 아래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주택 수요·공급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고 계획 규모를 결정하여야 함 - 사업지구 주변으로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주택단지, 산업단지, 교육시설 등 인구유발사업의 조성 현황과 이를 통해 유입이 예상되는 인원을 조사·제시 - 사업지구가 포함된 생활권의 계획인구와 현재인구 비교, 추진·계획중인 택지개발사업 간의 규모 비교, 최근에 조성된 주거단지의 초기분양률 조사·제시	• 본 계획의 필요성 및 특성 등을 검토하여 계획의 적정성을 제시함	반영
• 사업지구는 북측으로 문발천과 연결하고 법정보호종 큰키러기가 서식도래하는 농경지로 이루어진 입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 금회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밀도 증가와 이로 인한 누적적 생태환경영향이 예상되는데 입지 및 수단방법 대안은 동일한 입지를 대상으로 경계부 일부분을 9,300㎡ 변경하는 대안으로 형식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실효적인 대안 비교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파주시와 인접한 운정교하택지개발지구 개발 현황과 금회 계획대상지 입지 특성을 토대로 공동주택 조성 중심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필요성 및 규모 적절성을 비교하여 실효적이고 차별성 있는 다수의 복합대안을 선정·비교하되, 복합대안 선정·비교 시에는 수변공원 규모 확대 등 사업시행에 따라 증가하는 환경부하를 최대한 저감할 수 있는 대안을 선정·비교 제시	• 계획지구 주변 환경을 고려한 다수의 복합대안을 선정·비교하였으며 환경부하를 저감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제시함	반영	

<표 2 - 5> 계 속

구 분	검 토 의 견	반영내용 (미반영 사유)	비고
한강유역환경청	나. 입지의 타당성		
	1) 자연환경의 보전		
	가) 생물다양성·서식지의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주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법정보호종 맹꽂이가 조사되었으며, 해당 법정보호종 보전을 위하여 대체서식지가 금회 사업대상지 북측에 조성된 점을 고려할 때, 사업부지 내부에 맹꽂이를 포함한 법정보호종 양서류의 서식가능성이 높으나, 조사시기 가 적절하지 않으므로 해당 법정보호종 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추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정 확한 서식 현황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li> <li>- 서식이 확인될 경우, 사업부지 내 대체서식지 조성과 외부 기존 서식지로의 이주를 함께 계 획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정보호종(맹꽂이) 현지 조사를 실시(6월초)하여 결과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제시하였으며, 7월중 전문가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추후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할 계획 임</li> <li>- 현지조사 결과, 맹꽂이 개체가 확인되어 보호방안 등을 제시하였으며, 추후 추가조사결과를 통해 서식규모를 확 인하여 보다 구체적인 보호방안을 검토하겠음</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회 평가서에 큰기러기, 재두루미 등 법정보호조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 여 구체적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동 지역 철새의 비행고도 및 이 동경로 등의 현황을 추가 조사하여 영향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바, 추후 동계 조류조사를 통해 해당의견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겠음</li> </ul>	반영	
나)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형변화를 최소화하는 친환경적 부지조성 방안을 검토·제시하고, 사업시행 시 발생하는 절·성토 사면 발생구간에 대해서 사면안정분석 실시 후 절·성토 규모 축소 등 현장 여건에 맞는 사면안정대책을 수립하여야 함</li> <li>- 주변 지형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평면도 제시</li> <li>- 주요 절·성토 사면에 대해 종횡단면도를 작성하고 절·성토 사면의 높이, 사면경사 등 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형변화를 최소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계획평 면도 및 종횡단면도 등을 제시함</li> </ul>	반영	

<표 2 - 5> 계 속

구 분	검 토 의 견	반영내용 (미반영 사유)	비고
한강유역환경청	<p>다)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의 경관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역경관의 특성을 포함한 현황경관 분석결과와 이를 토대로 주변 가시지역의 주요 조망점 선정, 최적(안)에 대한 경관영향예측 시물레이션을 수행하여 영향 정도를 예측한 후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함</li> <li>- 계획으로 허용되는 용적율과 건폐율, 건축물 높이 등 3차원적 개발규모와 높이 등을 적용하여 조망점별 시물레이션 실시·영향검토 후 저감방안 등 검토·제시</li> <li>- 바람길 및 통풍성 확보, 주변과 조화로운 인공경관 스카이라인 계획, 개발에 따른 주요 지점 및 경계부 도로부에서의 시각적 압도감 저감계획 등 검토·제시</li> <li>- 인공경관 노출 최소화를 위한 단지 내 건축물의 차등적 배치와 자연성 기반의 차폐 기능 강화방안 등 검토·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황경관 분석결과와 이를 토대로 주변 가시지역의 주요 조망점 선정, 최적(안)에 대한 경관영향예측 시물레이션을 수행하여 영향 정도 등을 제시함</li> </ul>	반영
	<p>라) 수환경의 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회 계획은 사업지구 내 존재하는 소하천(방골천)을 폐지하고 기존 유로를 복개할 계획이나, 수계가 복개될 경우 하류 하천의 유량 감소(건천화), 수질 악화, 지하수 충전 기능 저하 및 생물서식지 기능 훼손 등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므로</li> <li>- 일부 구간 하천이설 및 부지경계 조정 등을 통해 기존의 수계를 최대한 유지하는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친수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li> <li>· 수변공간 완충지역 확보</li> <li>· 하천면적 및 유로변경이 있을 경우 소하천정비종합계획과의 부합 여부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지구 남측으로 대체수로 등을 확보하겠으며, 수변공원 및 완충녹지 등의 친수공간을 계획하였음</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 및 운영시 토사유출, 오수 및 비점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li> <li>- 침사지 용량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 가능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용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 및 운영시 토사유출, 오수 및 비점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정 저감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침사지 용량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여유용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함</li> </ul>	반영

<표 2 - 5> 계 속

구 분	검 토 의 견	반영내용 (미반영 사유)	비고
한강유역환경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시 발생하는 오수(약 2,776.3m<sup>3</sup>/일)는 통일동산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므로 파주시 하수도정비계획을 확인하여 공급처리시설의 대상구역, 공급처리량, 여유용량, 구역 내 추가 개발계획 등을 조사하고, 사업완료 시기를 고려하여 시설용량의 적정성 분석·제시(관련기관 협의근거 제시)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수의 공공처리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기관과의 협의결과 등을 제시함</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지구 운영시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사업지구가 속한 교하급수구역에서 상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상기 급수구역 내 용수수요량 증가로 2023년 완료되는 한강하류권 광역상수도 4차 사업을 통해 추가 확보되는 용수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공급할 계획이므로, 사업지는 평가서(본안)에 용수공급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관련기관 협의근거 제시)를 제시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수공급과 관련하여 적정성을 확인한 해당기관과의 협의 결과 등을 제시함</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기법을 적용하여 비점오염원 저감 및 물순환 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처리효율이 높은 비점오염물질 처리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기법을 적용하여 비점오염원 저감 및 물순환 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처리효율이 높은 비점오염물질 처리계획을 수립함</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으로 인해 계획지구의 불투수면이 증가됨에 따라 우수유출수의 최종 방류지점 홍수량 증가 등으로 침수 피해가 우려되므로 우수유출량 증가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영향성검토를 통해, 우수유출량 증가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제시함</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질오염총량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국립환경과학원, '19.3.)」에 따라 사업 시행 전·후의 발생·배출 오염부하량 및 삭감부하량을 산정·제시</li> <li>- 지역개발부하량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환경부훈령 제1378호, 2020. 12.28.)」 제28조에 따라 관할지역 시행청으로부터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받고, 같은 방침 제2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협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개발사업 부하량 산정 가이드라인(환경부 유역총량과 - 1413 (2015.6.19))」에 따라 지역개발 부하량 할당시기 연기 계획서를 제출(2021.04.19)하였으며, 추후 환경영향 평가 시 부하량 할당 협의를 실시하겠음</li> </ul>	반영

<표 2 - 5> 계 속

구 분	검 토 의 견	반영내용 (미반영 사유)	비고
한강유역환경청	2) 생활환경의 안정성		
	가) 환경기준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지구와 인접하여 다수의 정온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바, 공사 및 운영 시 대기질 영향(철거포함)을 예측하고 환경영향 및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지구 주변 정온시설에서의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정량적 예측 및 저감방안 등을 제시함</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지구 주변 도로(심학산로 등)와 정온시설의 거리가 인접하여 소음 영향이 예상되나 이에 대한 영향범위 예측이 누락되었으므로 소음 영향예측을 추가하고 소음 영향범위를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li> <li>-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 맞도록 사업시행 후 최대 소음도가 발생하는 시점에 대한 해당지구내(주거시설, 학교, 주상복합 중 주거목적 시설 등)의 수평, 수직적인 공간적 소음 영향범위를 제시하고(상세한 건축물 배치 등에 따른 각 동, 층별 소음도 예측이 아님)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대안을(토지이용계획 변경, 층수 제한, 상업시설 등의 전면배치 등)을 강구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구체적인 공동주택 건설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바, 목표연도 침두시를 기준으로 도로교통소음 영향범위 등을 검토하여 제시함</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음 민감계층이 상시 거주하여 높은 정온성이 요구되는 시설(교육시설, 병원 등)에 대해서 ‘공사장 소음 피해구제’ 확대를 위하여 기준을 ‘-5dB(A)’로 보정·적용*이 필요하므로,</li> <li>-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시 계획지구내 인접(234m 이격)한 심학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공사시 관리목표 기준을 -5dB(A)로 보정하여 평가하여야 함</li> <li>* 소음 민감계층, 공사장 소음 피해 구제 확대(환경부 보도자료, '18.1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내용 등을 검토하여 소음민감시설에 대한 영향 예측 등을 실시하였으며, 저감방안을 제시함</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정3택지개발지구는 본 사업지구와 인접해있고, 2022년 8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입주 후 본 지구의 공사기간과 중복되어 공사소음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li> <li>- 운정3택지개발지구내 건설예정인 인접 정온시설(주거 및 교육시설)에 대한 공사소음의 영향을 검토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지역 개발현황 등을 고려하여 본 계획시행시 입주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는 정온시설에 대하여 예측 및 저감방안을 제시함</li> </ul>	반영	

<표 2 - 5> 계 속

구 분	검 토 의 견	반영내용 (미반영 사유)	비고
한강유역환경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지구 주변 소음영향권 내에 다수의 정온시설 및 학교가 위치하고 사업 시행 시 소음진동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환경기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이 다수이므로 공사 진행에 따른 소음진동 피해를 예측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저감효과 포함)을 수립·제시하여야 함</li> <li>※ 소음·진동 현황조사는 최신 소음·진동공정 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27호)에 준하여 측정·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 진행에 따른 소음진동 피해를 예측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저감효과 포함)을 수립·제시함</li> <li>※ 소음·진동 현황조사는 최신 소음·진동공정 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27호)에 준하여 측정함</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지구 내 다수의 지장물이 있으므로 토양오염 유발 가능성이 높은 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토양오염 개연성을 확인하고, 실측조사를 통하여 향후 주거용지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 처리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지구 내 지장물 조사결과를 토대로 토양오염 유발 가능성설 현황을 파악하여 확인하고 처리방안을 제시함</li> </ul>	반영
	<p>나)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시행 시 발생하는 폐기물(지장물 철거시 포함)에 대하여 폐기물 분류별 성상, 종류, 발생량을 파악하여 제시하고, 폐기물 분류별 처리 주기를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장기 적치에 의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li> <li>- 폐기물 분류별 매립, 소각, 재활용 목표량(율)을 정량적으로 계획반영하고, 소각 및 매립 폐기물 감량화 계획을 자체적으로 강구하여 폐기물 처리 부하 최소화</li> <li>※ 소각, 매립, 재활용량(률) 계획 시 파주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을 참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시행 시 발생하는 폐기물(지장물 철거시 포함)에 대하여 폐기물 분류별 성상, 종류, 발생량을 파악하여 제시하고, 폐기물 처리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함</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지구 내의 의료시설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료시설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계획을 제시함</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할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하여 사업지구 내 에너지 절약 건축물 설치계획, LED 조명기기 설치계획, 저탄소 신재생에너지 사용계획, 에너지 사용 절감 및 효율 증대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제시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할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하여 사업지구 내 에너지 절약 건축물 설치계획, LED 조명기기 설치계획, 저탄소 신재생에너지 사용계획, 에너지 사용 절감 및 효율 증대 방안 등을 검토·제시함</li> </ul>	반영

<표 2 - 5> 계 속

구 분	검 토 의 견	반영내용 (미반영 사유)	비고
한강유역환경청	3)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p>가) 환경친화적 토지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지구는 범정보호종 큰기러기가 서식도래하는 농경지로 이루어졌으며 인접하여 운장교하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어 누적적 환경영향을 완충저감하기 위한 녹지공간 확보가 필요한 지역임.</li> <li>- 하지만, 금회 제시된 토지이용계획은 공원녹지 조성규모가 충분하지 않고 기존 수계를 복개하는 등 사업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누적적 환경영향을 실효적으로 완충저감하기 위한 공원 녹지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li> <li>- 특히, “개발구상”(33쪽)에 제시된 바와 같이 문발천-방골천으로 이어지는 블루-그린 네트워크 (Green-Blue Axis) 조성은 매우 중요하나, 사업부지 내부 방골천을 복개이설하는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였음</li> <li>- 따라서, 아래 제시한 사항들을 토대로 금회 개발사업과 인접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누적적 환경영향을 최대한 완충저감하기 위한 생태친화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li> <li>• 문발천 수변공원 조성 규모 확대 및 방골천 복개 지양</li> <li>• 사업부지 동측 경계부 방골천 수계는 보전하고 수변부로 충분한 규모의 완충녹지대 조성</li> <li>• 사업부지 내부 방골천 수계 보전이 어려울 경우, 남측 경관녹지대로 수로를 이설하고 경관녹지대 폭을 대폭 확대하여 사업부지 내부 및 경계부 방골천 수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li> <li>• “개발구상”(33쪽)에 제시한 바와 같이 사업부지 중앙부 녹지축(Green Axis) 확보를 위한 공원 녹지대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지구 동측부 방골천은 폐지하고, 계획지구 남측으로 방골천 대체수로를 마련하는 등 생태친화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li> <li>- 금회 추가된 학교부지 위치 등을 고려하여 중앙부 녹지축 확보를 위한 공원 및 녹지대를 조성함</li> </ul>	반영

<표 2 - 5> 계 속

구 분	검 토 의 견	반영내용 (미반영 사유)	비고
한강유역환경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지구 내 현재 생태면적률, 사업특성, 환경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시 불투수성 포장재로 사용을 최소화하고 투수성 포장 및 조경공간을 늘리는 등 목표·계획생태면적률(「생태면적률 적용 지침」 2016년, 생태면적률 최소달성목표 구도심외개발사업 40%)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을 설정·제시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지침에 따른 생태면적을 최소달성을 만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초안에 비해 목표생태면적율을 상향 계획함</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체적인 건축물 계획이 없어 일조장해 발생 여부 및 정도에 대한 검토가 어려우므로 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변 정온시설(주거지, 학교 등) 및 사업지구 내부의 시설물에 대한 일조장해 영향 여부를 검토하고 적정 저감대책을 마련·제시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바, 추후 환경영향평가시, 구체적인 건축물 배치 및 층 수 계획 등을 토대로 계획지구 내외부 일조장해여부를 검토하겠음</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지구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관련 경기도 조례·고시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이므로, 사업지구내에 설치하는 인공조명(가로등 등)으로 인하여 주거지 및 자연환경 등에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빛공해 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지구내에 설치하는 인공조명(가로등 등)으로 인하여 주거지 및 자연환경 등에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빛공해 방지계획을 수립함</li> </ul>	반영
	3.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반드시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안검토의견을 반영하였으며, 부득이한 경우 미반영 사유를 제시하였음</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본 검토의견과 여타 관계행정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그 내용 및 반영여부를 요약제시(각 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구분)하고, 반영된 의견은 해당항목에 작성·제시하여야 함</li> <li>- 본 의견보다 완화된 보전대책을 강구하거나 의견 간 상충 등의 사유로 반영되지 아니한 의견에 대하여는 미반영 사유와 함께 대안을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등을 제시함</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서상의 환경현황 조사내용, 환경영향 예측결과 및 저감대책 등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가능한 한 정량화 하여야 함</li> <li>- 특히, 현황조사 및 조사결과는 조사자 인적사항 및 조사자 의견을 첨부 제시하고 장래 환경영향 예측(예측조건, 예측적용 방법, 예측 시 사용계획, 수치 등)은 그 적용 및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서상의 환경현황 조사내용, 환경영향 예측결과 및 저감대책 등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함</li> <li>- 현황조사 및 조사결과는 조사자 인적사항 및 조사자 의견을 첨부 제시하고 장래 환경영향 예측은 그 적용 및 산정근거를 제시하였음</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대행에 따른 분리계약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원도급 및 하도급률 검토서 등을 부록에 제시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대행에 따른 분리계약여부 증명하 서류, 원도급 및 하도급률 검토서 등을 부록에 제시함</li> </ul>	반영	

<표 2 - 5> 계 속

구 분	검 토 의 견	반영내용 (미반영 사유)	비고
경기도 환경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생태면적률을 40.4%로 계획하였으나 해당 생태면적률 산정 시 방골천이 포함되었을 경우 하천 면적과 사업계획에 따라 추가 확보한 면적을 구분하여 제시하시기 바람</li> <li>- 사업부지 북서쪽 농림지역, 하천과 인접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녹지확보를 검토하고 건축물의 옥상녹화, 벽면녹화 등 다양한 공간유형을 적용하여 보다 친환경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시기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지침에 따른 생태면적율 최소달성을 만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초안에 비해 목표생태면적율을 상향 계획함</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 PM-10, PM-2.5, NO<sub>2</sub> 유지목표농도 만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기기를 설치하고 기준초과 시 즉시 추가 저감대책을 수립운영하시기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 PM-10, PM-2.5, NO<sub>2</sub> 유지목표농도 만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기기를 설치계획을 수립 하겠으며, 기준초과 시 즉시 추가 저감대책을 수립운영 하겠음</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조피해 예측 시 운정3택지개발지구 등 현재 계획 중인 사업 준공 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li> <li>-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건축물을 배치함에도 일조피해가 지속해서 야기되고 있으므로 설계단계에서 건축물 배치, 높이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건축물 배치계획은 가배치(안)으로 추후 실시설계 시 계획지구 주변 계획 중인 사업의 준공을 고려하여 일조피해를 예측하겠음</li> <li>- 설계단계에서 건축물 배치, 높이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음</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사업 추진 시 인구 유입으로 인해 증가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처리 가능용량 및 향후 설치계획 여부 등을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후 실시설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반입·처리 가능용량 및 향후 설치계획 여부 등을 포함하여 검토함</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계획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설계에 반영하시기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계획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사용,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수립하겠음</li> </ul>	반영

<표 2 - 5> 계 속

구 분	검 토 의 건	반영내용 (미반영 사유)	비고
파 주 시 환 경 보 전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승인부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2항 규정에 따라 인허가를 한 날로부터 20일내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권자(경기도지사)에게 사업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연환경보전법」 에 따라 인허가를 한 날로부터 20일내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권자에게 사업내용 등을 통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공사 중 멸종위기 야생생물 발견시 포획·채취, 이동(이식) 등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공사 중 멸종위기 야생생물 발견시 포획·채취, 이동(이식) 등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겠음</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략환경영향평가에 제시된 각 분야별 영향예측에 따른 저감방안 등을 준수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략환경영향평가에 제시된 각 분야별 영향예측에 따른 저감방안 등을 준수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음</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기, 소음 및 악취 등으로 인한 주변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기, 소음 및 악취 등으로 인한 주변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겠음</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100개 이상 설치 할 경우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9조(충전시설 설치대상)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같은 조례 제3항 각 호의 사항(충전시설의 종류, 수량 및 설치지점 등)을 시설물 건축계획에 포함하여야 함 * 설치 할 충전시설의 수의 20% 이상을 급속 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겠으며, 해당 시설물의 건축계획에 포함하겠음</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적인 사업(보완) 수질오염총량 협의결과 별도송부 - 사업 진행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사업(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비고란 제3호 기목 제외)과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 제21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재협의, 변경협의 포함)의 대상사업인 경우 부하량 협의를 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개발사업 부하량 산정 가이드라인(환경부 유역총량과 - 1413 (2015.6.19))」 에 따라 지역개발 부하량 할당시기 연기 계획서를 제출(2021.04.19)하였으며, 추후 환경영향평가 시 부하량 할당 협의를 실시하겠음</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규모가 1,000㎡이상으로 공사 시작 전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건설공사장 관리카드 포함)를 반드시 득해야 하며, 공사장 주변 거주자 등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한 사업장 경계부분 헨스 설치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 세륜 시설 계획 등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미신고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기환경보전법」 을 준수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건설공사장 관리카드 포함)를 실시하겠으며, 공사장 주변 거주자 등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한 사업장 경계부분 헨스 설치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 세륜 시설 계획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겠음</li> </ul>	반영

<표 2 - 5> 계 속

구 분	검 토 의 건	반영내용 (미반영 사유)	비고
파 주 시  환 경 보 전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 시행 시 공사장 내, 공사차량 진출입로 등 비산먼지로 인한 오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살수조치 및 공사장 출입구에 전담인력을 별도 배치하여 비산먼지 오염원이 공사장 외부에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 시행 시 공사장 내, 공사차량 진출입로 등 비산먼지로 인한 오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살수조치 및 공사장 출입구에 전담인력을 별도 배치하여 비산먼지 오염원이 공사장 외부에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음</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 시작 전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굴삭기 등 특정장비(동법 시행규칙 별표9)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공사 전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반드시 득해야 하며, 공사장 인근 주택 거주자 등의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음 흡입방음벽 설치 및 저소음 장비 사용, 작업자 사용 장비 투척금지, 공사장 거푸집, 알폼 해체 시 바닥 매트리스 사용 등 공사장 소음피해 방지 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단,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 주택, 운동, 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은 제외됨.) ※ 미신고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 시작 전 「소음진동관리법」 을 준수하여 특정공사 사전 신고를 시행하겠으며, 공사장 인근 주택 거주자 등의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음 흡입방음벽 설치 및 저소음 장비 사용, 작업자 사용 장비 투척금지, 공사장 거푸집, 알폼 해체 시 바닥 매트리스 사용 등 공사장 소음피해 방지 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겠음</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또한, 공사 진행 시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인 주간 65db 이하, 야간 50db 이하, 아침, 저녁 60db이하를 준수하여 운영 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 시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준수하겠음</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으로 장식을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2조 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등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등을 준수하겠음</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동법 제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지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파주시장(환경보전과)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내공기질 관리법」 에 따라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겠으며,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지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파주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토록 하겠음</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보건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6조 별표2 규정에 의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 관리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보건법」 을 준수하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 관리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겠음</li> </ul>	반영

<표 2 - 3> 계 속

구 분	검 토 의 견	반영내용 (미반영 사유)	비고	
파 주 시	환 경 보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보전법」 제23조제6항(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준공전)</li> <li>※ 권고사항 : 도심지역, 거주자 주택 인근 공사 시 공사장 출입구 외부 벽면에 표출용 소음 측정기 설치로 공사장 내 소음 규제기준 준수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준공전 「환경보전법」 제23조제6항(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li> </ul>	반영
	도 시 경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고물 설치시 허가나 신고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고물 설치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하겠습니다</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옥외광고물(간판) 설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조례, 고시 등에 따라 사전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설치하여 주시기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옥외광고물(간판) 설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조례, 고시 등에 따라 사전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설치하겠습니다</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따른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교통수요 파악 및 교통혼잡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제출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현재 및 장래 목표연도에 대한 교통수요 예측을 실시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종합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li> </ul>	반영
	산 립 농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농지분야협의를 득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인가시 농지전용협의를 득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역지정(개발계획) 시 농지분야협의를 득할 예정이며, 실시계획 인가 시 농지전용협의를 득하겠습니다.</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협의를 득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시계획 인가 시 득하겠습니다.</li> </ul>	반영	
상수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수산정량 2,781 m<sup>3</sup>/일, 외부유입율을 고려한 용수량 재산정 1,237 m<sup>3</sup>/일</li> <li>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며, 상수도 사용계획 시 상수도 공급을 위한 분기점과 관경 확대, 가압장 설치 등 세부 계획은 상수도과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모든 공사비는 원인자 부담으로 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수량은 재산정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상수공급 관련 세부계획은 상수도과와 사전협의하고 원인자 부담으로 공사 시행하겠습니다.</li> </ul>	반영	

<표 2 - 5> 계 속

구 분	검 토 의 견	반영내용 (미반영 사유)	비고
하수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부사업계획 수립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위치, 사업기간, 사업비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입주시키는 통일동산 하수처리시설(증설) 준공 이후로 계획하여야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수도과와 협의하여 입주시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 및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겠음.</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수처리계획을 기존차집관로 연결하는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출판단지 중계펌프장 및 차집·방류관로 증설(또는 별도계획)되어야 하므로 세부검토 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수도과와 협의하여 중계펌프장 및 관로계획 등을 세부검토 후 사업계획에 반영하겠음.</li> </ul>	반영
파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부지 내 국·공유지에 대하여 관리청에 유무상 귀속 협의를 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시계획 인가 시 협의하겠음</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저탄소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시계획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겠음</li> </ul>	반영
파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홍수량 산정 및 설계빈도 적용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발사업(신도시, 메디컬클러스터 등)으로 인한 불투수 면적이 증가함에도 CN값이 오히려 감소되어 홍수량의 변화가 미미한 것으로 제출한 바, 이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회 산정한 CN값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과 비교검토하기 위하여 현상태로 산정하였으며 개발사업을 반영한 CN값을 재산정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음.</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확률강우량이 파주시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방재성능 목표 만족여부에 대한 추가검토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파주시 방재성능목표는 확률강우량의 50년빈도와 80년빈도 중간으로 금회 농경지에서 도시지역으로 주변현황이 변경될 것을 고려하여 80년 빈도로 상향하여 계획함</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이용현황 변경(농경지→도시지역)을 감안, 대체시설 설계빈도 변경을 검토(50년 빈도 → 80년 빈도)하여 계획홍수위, 대체수로 여유고, 대체수로 폭원 등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위계획인 파주시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계획빈도에 부합되도록 계획하였으나 사업부지가 도시화됨에 따라 80년 빈도로 상향하여 계획하도록 함</li> </ul>	반영

<표 2 - 5> 계 속

구 분	검 토 의 견	반영내용 (미반영 사유)	비 고
파 주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개발에 따른 홍수량의 변화가 본류하천(문발천)에 미치는 영향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골천 유역계의 변경, 문발천 합류지점 변경, 토지이용계획 변화에 따른 홍수량 변화 등 다양한 변화가 발생됨에 따라 문발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치수적 안정성 확보방안 제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부지내 유출량 증가에 따른 홍수량은 재해영향평가에서 우수유출저감계획을 수립하여 저류지 등 저감시설을 계획하였음. 향후 실시계획수립시 정량적인 검토를 통하여 상세저류지 제원 및 저감시설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하류에 위치한 문발천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음.</li> <li>- 대체수로 방류부(문발천합류부)에는 하상보호공을 설치하여 대체수로방류량에 의한 문발천 하도 세굴을 방지하도록 계획하겠음.</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체시설(대체수로) 유지관리 주체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지는 소하천(방골천)을 폐지하고 대체수로 신설 계획인 바 하류부에 남은 기존 수로 준치여부 및 유지관리 주체, 대체시설(대체수로) 유지관리 주체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준치수로는 파주운정3지구 인접부지하여 LH공사와 협의 후 성토되어 금회 토지이용계획에 의해 계획될 예정임</li> <li>- 소하천이 폐지되면 대체수로의 유지관리 주체는 하수도과로 이전되어야 하며 유지관리방안은 향후 실시계획 수립시 제시하도록 하겠음</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추진 전 소하천 폐지, 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영향성평가(행정계획)는 현재 심의중이며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재해영향평가(개발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소하천 폐지를 법적절차에 의해 이행하도록 하겠음.</li> </ul>	반영

<표 2 - 6> 주민의견 반영결과

구 분	검 토 의 견	반영내용 (미반영 사유)	비고
주 민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겠습니다</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주메디컬클러스터는 의료, 바이오, 의학, 연구소 등이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히 병원과 600개여개 혁신의료 기업이 입주하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이 많을 것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지구 주변으로 공동주택 중심의 대규모 신도시가 개발 중 임을 고려하여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항목별 저감방안을 수립함</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안 10.1.4항 수환경보전에 관련하여 초안에는 생활오수만 검토하였는데, 오수 조사 보다는 앞서 언급한 의료 관련 업체와 병원이 입주하므로 이곳에서 발생하는 산업 폐수와 의료 폐수를 조사하여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대책이 필요 함. 외부 위탁 처리 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폐수 보관 방법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보관에 따른 부패와 병원균 누출 등).</li> <li>- 현재 통일동산 공공하수처리장은 산업 폐수 처리가 불가 할 것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시 구체적인 입주업체 시설 설치계획 등을 기준으로 오폐수 발생량 및 처리계획 등을 제시하겠습니다</li> <li>-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적절한 오폐수처리계획을 수립함</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2.2 환경기초시설의 적합성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원과 연구소에서 배출 되는 의료폐기물은 1)조직물류폐기물, 2)병리계폐기물, 3)손상성폐기물, 4)생물.화학폐기물, 5)혈액폐기물 이 발생 할 것이고 이를 어떻게 처리 할지 조사요 기초자료 조사에는 생활 폐기물만 나열 됨</li> <li>- 정부에서는 최근 코로나 19로 의료폐기물 처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있음. 가령 격리의료 폐기물은 당일 처리를 하려 함</li> <li>- 무엇보다 수도권에는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이 부족하여 360km 떨어진 경상도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 임</li> <li>- 이런 것으로 해서 병원과 의료폐기물 발생업체는 적법한 처리에 소홀 할 수 있으니 초기 환경평가 부터 어떻게 처리 할지를 평가서에 명문화 하여 철저히 대응 해야 할 것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시 구체적인 입주업체 시설 설치계획 등을 기준으로 의료폐기물 발생량 등을 예측하겠으며,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li> </ul>	반영

<표 2 - 6> 계 속

구 분	검 토 의 견	반영내용 (미반영 사유)	비고
주 민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2.1.2 대기질(악취) 관련 : 입주 업체의 특성 상 악취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발생원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이에 필요한 설비 도입을 검토하여 입주자들이 초기 부터 설치하게 명문화 할 것</li> <li>- 또한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는지 건설 및 운영 단계에 주민 참여 patrol 제도를 도입하여 쾌적한 심학산 도시가 되어 할 것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악취 유발 업체는 입주할 수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추 후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시 구체적인 입주업 체시설 설치계획 등을 기준으로 악취 발생 영향여부 등을 검토·제시하겠음</li> <li>- 주민참여 patrol 제도 등 주민참여형 관리방안 도입을 검토하겠음</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2.3.2 친환경적 자원순환 관련 : 인근의 운정지역은 지역난방이 공급되고 있음. 이곳도 지역난방을 도입하여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노력이 필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지역난방공사 과주시사 협의 결과 지역·냉난방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어 지역난방을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 함</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기 나열된 것들을 조사해야 과주메디컬클러스터 입지가 적합한지 판단 할 수 있을 것이고, 추가하여 이런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확인하는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 생각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민의견 수렴 및 설명회·공청회 등을 실시할 계획임</li> </ul>	반영